

대구예술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

(개정 2001.03.01.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강사료 및 제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의의 구분과 정의) 우리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습, 실험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실습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4. 전임교원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5.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 (강사료 지급 기준) 강사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강의시간 단위는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2분의 1로 할 수 있다.
2. 우리 대학교 행사(체육대회, 견학, 교육실습, 학습답사 등)및 우리 대학교의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및 공식 출장시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기제 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보강한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4. 개인렛슨의 시간산출은 따로 정한다.

제4조 (강사료 산출) 강사료 산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임교원의 초과강의수당은 4주 단위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타 대학(교) 출강 시는 전임교원 주당 한계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일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우리 대학교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시간 강사료는 4주 단위로 지급한다.

제5조 (책임시간 미달)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미달된 시간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수에 합산한다.

제6조 (강사료 정액) 우리 대학교의 시간당 강사료 지급 정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7조 (특강료) 초빙강사(국내.국외)의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강사(국내.국외)의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규정된 강사료의 2배 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강료를 증액 지불할 수 있다.
2. 특강 통역료는 강사료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8조 (강사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별도로 한다.

1. 수강인원이 100명이상 160미만은 강사료 정액의 25%를, 160명이상 200명 미만은 강사료 정액의 50%를, 200명 이상은 강사료 정액의 100%를 각각 추가 지급한다.

2. 시험기간의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실제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하지 아니 한 교원에게는 그 시간만큼 공제한다.

3. 학과 및 교과목의 특성상 특별히 초빙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증액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수강인원기준) 교실당 수강인원의 기준은 이론강의 100명, 실습 및 회화 강의는 30명으로 하고, 실습 및 회화강의의 경우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반 할 수 있다.

제10조 (제수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한다.

1. 학점취득 특별시험의 출제 및 채점수당은 강사료 정액의 2배로 한다.
2. 전호의 감독수당은 강사료 정액으로 한다.

제11조 (강사료 지급 기준일) 강사료 지급일은 매월 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